



: 2021-01-22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두6746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013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현행법 제49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다시 개정되었고 2021. 5. 20.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각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제1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제2호)이라고 구분하였다. 현행법 부칙(2012. 3. 2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점차 복잡하고 치밀해짐에 따라 보다 충실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참조)인 처분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내용과 개정 취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위와 같이 구법의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현행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



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2012. 6. 22.)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처분 당시의 법령인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구법 제49조 제4항이 정한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나 현행법 부칙에 위와 같은 경우에 구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법에 비하여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바459 등 결정 참조).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적용할 공익상 요구가 중대함에 비하여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2010. 2. 11.이고, 이 사건 제2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2011. 3. 17.이다.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는 현행법 시행일인 2012. 6. 22.을 기준으로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의 각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16. 6. 22. 조사를 개시하였고, 현행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시효 기간 내인 2018. 5. 14.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2021-01-22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